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
----------	----

제안년월일 : 2004. 2. 18.
제안자 : 박승석위원외1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3.7.18. 법률 제6927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2003.12.18.)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경비를 조정하고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그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
- 나.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함(안 제7조 별표1 및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등 이를 위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200,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별표1> 중 일비란 및 숙박료란과 비교1,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원)

구 분	숙박료 (1야당)
의장·부의장	46,000
의 원	25,000

비고1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비고2의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별표2>중 숙박비(1야당)란 비교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미불화)

구 분	숙 박 비	
의 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부의장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 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비고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세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페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 이를 위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등 이를 위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일비·숙박료란 (단위:원)		제7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일비·숙박료란 (단위:원)		
구 분	숙박료(1야당)	구 분	숙박료(1야당)	
의 장	41,000	의 장	46,000	
부의장		부의장	25,000	
의 원	22,000	의 원	25,000	
제7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비교 비교 : 1. (....., 직할시, ...)		제7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비교 비교 : 1. (....., 광역시, ...)		
2. 교통부장관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7조제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미불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숙박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5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109</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부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8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72</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3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8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6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56</td> </tr> </tbody> </table> <p>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p> <p>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p> <p>나. 나등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 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p>다. 다등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구분	숙박비	의장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부의장	다등급 84	라등급 72	의원	가등급 132	나등급 86	다등급 64	라등급 56	<p>제7조제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란</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미불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숙박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6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12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부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9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79</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의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등급 14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등급 9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등급 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등급 62</td> </tr> </tbody> </table> <p>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p> <p>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p> <p>나. 나등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p>다. 다등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구분	숙박비	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부의장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구분	숙박비																										
의장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부의장	다등급 84																										
	라등급 72																										
의원	가등급 132																										
	나등급 86																										
	다등급 64																										
	라등급 56																										
구분	숙박비																										
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부의장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현행	개정안
<p>(2) 남, 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p> <p>(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p> <p>(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p>	<p>(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p> <p>(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p> <p>(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세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p>
<p>라. 라등급</p> <p>(1) 아시아주, 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p> <p>(2) 남, 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이, 수리남</p> <p>(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p> <p>(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질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p>	<p>라. 라등급</p> <p>(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p> <p>(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p> <p>(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p> <p>(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